

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13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감액되어 2023년 수입·지출 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변경사유 : 2022년도 예치금 1,711백만원 감액으로 인한 2023년도 수입·지출계획 변경
- 나. 2023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○ 수입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수 입 합 계	25,249,497	23,538,334	△1,711,163	△6.8
경상적세외수입	421,172	421,172	-	-
이자수입	421,172	421,172	-	-
보전수입등	15,228,325	13,517,162	△1,711,163	△11.2
융자금원금수입	8,529,000	8,529,000	-	-
예치금회수	6,699,325	4,988,162	△1,711,163	△25.5
내부거래	9,600,000	9,600,000	-	-
전입금	9,600,000	9,600,000	-	-

○ 지출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정책·단위·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 출 합 계	25,249,497	23,538,334	△1,711,163	△6.8
인적자원 역량 강화	18,000,000	18,000,000	-	-
공무원 복지증진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18,000,000	18,000,000	-	-
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	18,000,000	18,000,000	-	-
행정운영경비(행정국 인력개발과)	7,000	7,000	-	-
기본경비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7,000	7,000	-	-
기금관리비	7,000	7,000	-	-
재무활동(행정국 인력개발과)	7,242,497	5,531,334	△1,711,163	△23.6
보전지출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7,242,497	5,531,334	△1,711,163	△23.6
예치금	7,242,497	5,531,334	△1,711,163	△23.6

Ⅲ. 검토의견

-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이 △17억 1,100만원 감액되어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△17억 1,100만원)와 지출계획중 예치금(△17억 1,100만원)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감액분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,
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²⁾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수입계획)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(지출계획)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 -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23.6%, △17억 1,100만원 감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 됨
- 동 기금의 예치금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감소된 것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용자사업인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은 선정자에게 기본 2년, 2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어 상환인원보다 연장인원이 증가하여 '22년도 결산결과 지출계획중 예치금(△17억 1,100만원)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'22. 7), p.296

〈표 3-1〉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25,249	23,538	△1,711	△6.8
인 적 자 원 역 량 강 화	18,000	18,000	-	-
재 무 활 령 개 발 과 동 (행 정 국 인 력 개 발 과)	7,242	5,531	△1,711	△23.6
보 전 지 출 (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)	7,242	5,531	△1,711	△23.6
예 치 금	7,242	5,531	△1,711	△23.6
행 정 운 영 경 비 (행 정 국 인 력 개 발 과)	7	7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지출계획, ②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수·지 운용계획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금의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용자
2.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
3.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